

교원인사규정

제정 1998. 3. 1	개정 2012. 3. 1
개정 2002. 10. 1	개정 2012. 9. 1
개정 2005. 2. 16	개정 2014. 1. 1
개정 2005. 8. 23	개정 2016. 3. 1
개정 2007. 3. 21	개정 2016. 9. 1
개정 2007.11. 21	개정 2017. 3. 1
개정 2008. 2. 28	개정 2017. 6. 1
개정 2009. 3. 25	개정 2017. 11. 27.
개정 2009. 6. 19	개정 2019. 6. 17.
개정 2010. 9.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동 법 시행령,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 등에 준하여 교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함과 우수 교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및 특별한 다른 규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교원의 구분) ① 전임교원이라 함은 총장 외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일반직과 전담직으로 나뉘며 전담직 교수로는 강의전담, 산학협력전담, 연구전담 등을 둘 수 있고 전임교원 일반직중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전임교원 외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강사(이하 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자격) ① 전임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나,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겸임교수는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3.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4.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자
5. 소속 기관장의 출강동의를 받을 수 있고 타대학 겸임교수 또는 초빙교수로 임용되지 않은 자

6. 각 모집분야별 세부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7. 소속 기관장의 출강 동의를 받은 자
- ③ 초빙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
 2.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자
 3.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
 4.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대학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5.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자
- ④ 전담직 교수의 의무, 처우, 임용기간 및 재임용 기준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 ⑤ 대학의 홍보, 프로젝트 등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⑥ 총장은 산학협력촉진을 통한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전임 및 비전임교수 중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임명하거나 신규임용 할 수 있다.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⑦ 제4조(전임교수 구분)의 연구교수는 대학발전전략 수립 및 전공분야의 심도 깊은 학문연구를 위해 임명할 수 있으며 매학기(또는 매년) 관련 연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⑧ 강사의 자격은 강사인사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신규임용

제6조(신규임용)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 혹은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한다. 세부자격기준은 임용 전공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겸임 및 초빙교수의 신규임용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 혹은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교를 정년퇴직한 교원의 경우에는 해당학과 전임교원 전체의 서면요청에 의해 겸임 또는 초빙교수로 특별 채용 할 수 있다.
- ② 박사학위, 전문의, 기술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소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고교 교원, 조교경력, 기타 일반직종 등의 경력만으로는 부교수 이상의 상위직에 임용하지 못한다.
-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④ 전임교원은 담당과목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 일치한 자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담

당 과목 전공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담당과목과 관련한 교육경력·연구경력·산업체 경력이 탁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한다.

1. 연구실적편수 : 학과와 관련이 있는 2편(200%) 이상

2. 인정기간 : 임용일 기준으로 발급된 지 최근 4년 이내(단, 조교수 임용의 경우 1편(100%)의 연구 실적이 부족할 때에는 1년 이내에 제출하겠다는 서약서로 유예할 수 있으며, 서약기간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단, 겸임 및 초빙교수와 외국인교원의 경우, 연구실적물 심사는 제외할 수 있다.

⑥ 대학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 퇴직 전 직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퇴직 전 직급의 상위직급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⑦ 특별채용에 관한 부분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⑧ 외국인교원의 임용기간, 심사, 계약내용 등의 임용관련사항은 제6장에 의한다.

⑨ 강사의 신규임용은 강사인사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용절차 및 계약) ① 전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정관 제39조에 의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삭제

③ 강사 및 겸임교수는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용한다.

제8조(임용시기) 교원의 임용 시기는 매년 학기 초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제39조의5에 의한 특별채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임용기간) ① 전임교원의 임기는 정관 제39조의2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단, 최초임용 및 전담직 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1. 교수 : 정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 정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거나 6년

3. 조교수 : 2년

② 겸임,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임용기간 만료 전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는 정년 시까지 임용기간으로 본다.

⑥ 임용기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임용기간 중에 승진, 전직,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그 발령일로 부터 다시 임용기간으로 정한다.

⑦ 임용기간 중 병역복무, 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임용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그 외 임용기간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강사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연구실적의 범위) 교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한다.

1. 논문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의 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2.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저서(출판된 것에 한함)
 - 나. 학회지
 - 다. 논문집
 - 라. 정기간행물 (학술지로 공인받은 것에 한함)
 - 마. 예·체능계에 있어서는 창작, 발표, 전시, 입상 등을 말한다.

제11조(연구실적의 인정)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예·체능계 전공은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조서와 증빙자료로서 대체할 수 있다.

⑤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신규 임용의 경우에는 현 직명에서 취득한 학위논문에 한한다.

⑥ 학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한 연구보고서는 논문으로 인정한다.

⑦ 담당과목과 관련된 현장프로그램 또는 산업체 프로젝트 참여와 특허취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1. 현장프로그램 참여나 산업체 프로젝트 참여기간이 1개월 이상 1건으로서 단독은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를 인정한다.
 2. 특허발명 취득으로서 발명은 국제 1건 200%, 국내 1건 100%, 실용신안 1건 100%를 인정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연구논문은 연구자의 전공분야와 다르더라도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1. 전문대학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2. 직업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3. 산학협동(산업체 현장문제, 학생 현장실습 등)에 관한 연구

4. 학생 생활지도 및 취업지도에 관한 연구

제12조(연구실적심사) ① 연구실적물의 심사는 전공분야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그 중 1인은 법인 임직원과 본교 교직원이 아닌 자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상위직으로 하되 총장이 위촉한다.

③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를 생략한다.

④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논문을 2인(지도교수 포함) 공동명의로 발표한 경우에는 취득자 단독논문으로 간주한다.

1. 1인 연구 또는 편찬 : 100%인정
2.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70%인정
3.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50%인정
4. 4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30%인정

⑤ 삭제

⑥ 예·체능계 실기(연기,연주,발표,전시,창작,출품,입상 등)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 기준은 교원신규임용공개채용심사지침에 따른다.

⑦ 삭제

제12조2(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 ① 교원 신규채용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 전공분야의 일치여부 및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초 및 전공 심사위원을 둔다.

②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은 모집 전공분야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과장의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위촉기간을 정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단,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본 법인의 임직원과 본교의 교원 및 직원이 아닌 자로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는 인비(人秘)로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임용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3(심사절차 및 기준) 교원 신규 채용 절차는 정관 제39조3 제3항에 의하며 각 단계별 심사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연구실적물 예외인정) 삭제

제14조(기타) 교원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 청강학원의 정관과 교원신규임용공개채용심사지침에 따른다.

제3장 재임용 · 재계약

제15조(임용일자의 소급금지) 교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삭제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결과에 따라 원정계가 변경된 때

제16조(재임용)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재임용한다. 다만, 강사 및 비전임교원(초빙교수를 제외한다)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교의 장이 재임용한다.

② 재임용 시기는 각 학년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한다.

③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2월말, 8월말)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보고 다음 학기 개시일(3월 1일, 9월 1일)에 재임용한다.

④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 출장중인자의 파견 또는 출장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 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재임 중에 승진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임용기간으로 본다.

⑥ 휴직(병역,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 교육부장관 지정기관의 연수 등)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삭제

⑧ 재임용기간은 제9조에 따른다. 단, 2002년 1월 1일 이전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정관 제39조2를 따르지 않는 교원은 정관 제39조의4를 준용한다.

⑨ 재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담직 교수 전환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에 의한다.

제16조2(재임용의 절차) ①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 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의신청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정관 제48조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재임용기간만료 통보, 의견서 제출, 재임용 결과 통보 등의 재임용에 관한 제반 행정사항은 총장

이 임용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강사의 재임용 절차는 강사인사규정에 의한다.

제17조(재임용 심사기준)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도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재임용·재계약에 의한다.

제18조(정년자의 재임용기간) 임용기간 만료 전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는 정년 시까지 재임용하며, 임용 장에는 정년 시까지 임용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승 진

제19조(승진) 교원의 승진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실시한다.

제20조(승진임용권자) 교원의 승진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21조(임기) 승진 시 임기는 정관 제39조의 제4호를 준용한다.

제22조(승진소요연수) 교원이 승진함에 있어 최저 소요연수는 다음과 같다.

직명별	소요연수	비고
조교수 → 부교수	6년	
부교수 → 교수	6년	

제23조(승진의 요건) 별도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기준에 의한다.

제24조(승진의 제한) ①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학기 및 그 직후의 학기, 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및 그 직후의 학기에는 승진하지 못한다.

② 징계처분 및 휴직의 기간은 이를 승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 교수로 승진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연 수

제26조(산업체 현장연수) 교원의 자질 향상과 산학 연계를 위하여 임용교과목과 연관이 있는 산업체 현장연수를 말한다. 다만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산업체 현장연수 대상기관 범위) 산업체 현장연수 대상기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학협동 유관업체
2. 학생 현장실습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이상의 업체

4. 교육부, 관련학회 및 협회주관(후원)의 연수
5. 전국 전문대학 학과별, 계열별 공동연수(학교 내 자체연수 제외)
6. 임용교과목과 관련된 해외 연수 또는 시찰
7. 기타 연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또는 기관
8. 어학계열, 인문과학계열 전공 교원들의 관련학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참가

제 6 장 외국인교원 채용

제28조(외국인교원의 범위) 외국인교원이라 함은 외국인(이중국적자 제외)으로서 학술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구의 지도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대학의 학생수업을 담당하는 말한다.

제29조(외국인교원 채용) ① 외국인 교원의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다.

1. 담당과목이나 강의내용 등을 볼 때 국내인으로 대체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국내인보다 교육 효과가 현저히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별표 1에 의해 대학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소지자
3. 체류기간이 정관에 정한 임용기간 보다 길거나 정관의 임용기간 동안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실적물 심사는 제외할 수 있다.
- ② 외국인전임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 시 조교수로 임명하되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 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외국인교원(전임 및 초빙)은 총장과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계약서는 계약기간, 소속 학과, 강의시간,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④ 외국인교원의 임용기간은 직명에 관계없이 1년으로 하되 강의평가결과와 스쿨원장 혹은 관련 부서장의 추천으로 재계약한다. 외국인교원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에 의한다.
- ⑤ 외국인전임교원은 교원업적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7 장 보직

제30조(보직) 보직은 정관 제73조 내지 제76조 및 학칙 제5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1조(임기) ① 보직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 : 2년 (2017.6.1. 개정)
2. 부총장, 행정부서장, 스쿨원장,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 : 1년

② 보직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타 각 위원회 등의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한다. 다만, 보직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임기와 동일하다.

제 8 장 보 수

제32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보수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9 장 복 무

제33조(복무) 교원은 교원복무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복무한다. 다만, 강사에 대하여는 교원복무규정 제2조에 따라 적용한다.

제 10 장 표창 및 징계

제34조(표창)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때
2. 창의적 제안으로 예산절감, 교육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제35조(표창수상자의 특전) 표창을 받은 자에게는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특별 상여금 지급
2. 특별 휴가
3. 특별 승급 및 승진
4. 기타

제36조(징계의 사유) (삭제)

제37조(징계의 종류) (삭제)

제38조(직권면직)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할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9조(변상책임) 교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 제40조(면직)** ① 계약 임용된 교원은 학기 중 원칙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 다만, 학기중에 강의를 지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정신적, 신체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 할 경우에는 사직할 수 있다.
- ② 사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해당스쿨(과) 원장(학과장)에게 이를 알리고 사직원은 교원인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교원인사 담당부서장은 사직을 희망하는 교원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③ 계약 임용된 교원이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위배하거나 본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면직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17.11.1.)

제41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교직원인사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외국인전임교원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경과조치) 2009년 3월 25일 개정 규정은 전문대학 학장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고등교육법 개정 시부터 총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일반직 교수의 전담직 교수 전환 심의는 2010년 9월 1일 현재 임용기간이 50% 이상 남은 자의 재임용 심의 도래 시 실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⑤항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①항 및 제22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1일 현재, 조교수로 재직 중 이거나 조교수로 승진임용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인 자는 재임용 기간 및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소요연수를 각 4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강사에 관한 사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